

●법무부령 제1080호

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07월 30일

법무부장관 인

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
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

제1조(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조(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## 보상금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성별	생년월일
	주소		
	직장(소재지)		
	직업(직위)		

신청 내용	사건 개요
	사건 처리 결과
	보상금 지급 제한사유가 있는지
	신고 관련 별도의 보상금·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는지
	신청인 의견

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※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.

사유 :

확인자

(기관명)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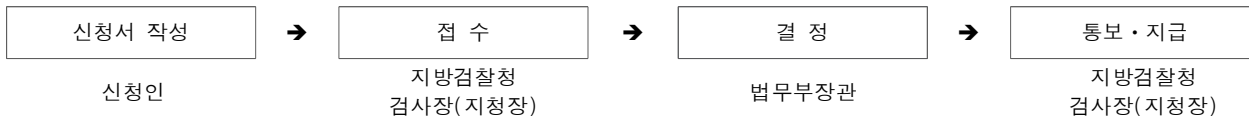
인

익명·가명신청  
검사 승인

안내사항

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
### 처리절차



## 구조금지급청구서

청구인	성명(가명)	
	주민등록번호	
	주소	

구조결정번호	
--------	--

결정주문	구조금( )원을 피구조자 (가명)에게 지급한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지급방법	계좌입금	은행명	
		계좌번호	
		예금주	
	직접지급	피구조자 수령( ) 대리인 수령( )	

※ 대리인이 구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피구조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를 첨부해야 합니다.

「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(가명)

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

##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성매매 범죄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안내사항에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기한을 알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고,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청구한 자가 그 구조금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려는 경우 피구조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